

「2026년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곡성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2026년 「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」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6.

곡 성 군 수

1. 모집개요

○ 사업기간 : '26. 3. ~ 12.

○ 지원대상 : 참가신청일 현재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중장년 취업자

1) 월 급여 당해 최저임금 책정액 이상(중장년이 받는 취업장려금은 별도) 지급 가능한 중소기업

2) 중장년 근로자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간지·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체 모집하여야 함

※ 중장년자격 요건 : 참가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내 주소를 둔 만 46세 이상 ~ 6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, 업무 협약(곡성군⇔실시기업) 이후 신규 채용 된 자(2026년도 만 46세가 도래하는 1980. 12. 31.이전 출생자는 만 46세로 간주)

○ 지원규모 : 1개소 / 1명

○ 지원내용

-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지원(매달 기업 50만원, 중장년 30만원씩 지급)

※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 포함하여 최대 10개월 지원

- (고용유지금) 기업에 총 500만원 지급(매달 50만원씩 최대 10개월)

- (취업장려금) 중장년에게 총 300만원 지급(매달 30만원씩 최대 10개월)

※ 지원금 지급은 예산상황, 근로자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달라질 수 있음

○ 추진절차 : 모집공고 →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→ 업무협약(곡성군 ⇔실시기업) → 기업 자체 취업희망자 접수 및 선발
→ 중장년 취업자 사업장 근무→ 지원금 교부 → 정산

○ 접수기간 : 수시모집

(단, 근무시간 09:00~18:00에 한하며, 기간 중 토·일요일,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)

○ 접수처 :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(☎061-360-2932)

○ 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
- 주소 : 57536)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(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)

○ 신청서류

1) 중장년취업채용신청서(서식 1)

2)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(서식2)

3)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(서식3)

4) 국세납세증명서 1부.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.

5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
○ 선정방법 : 신청자격 제외 대상 확인과 선정 심사표를 통해 심사

2. 실시기업 신청자격

2-1. (대상기업) 곡성군에 소재하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

(예외) 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어업회사법인, 지역 에너지·ICT기업, 중소벤처기업부(중소기업청)가 지정한 대학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

○ “상시근로자”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, “상시근로자 수”는 중장년취업지원협약 체결 시 “고용보험 피보험자 수”로 한다.

2-2. (제외대상) 아래 사업장은 중장년취업 실시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① 소비·향락업체(단란주점 등), 근로자 파견·공급업체(용역업체 포함)
-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(예,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- ③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체납, 국·지방세 등 체납 기업
- ④ 중장년 취업자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
-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중장년 취업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
- ⑥ 중장년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,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(보험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
- ⑦ 학원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속소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도로교통법」에 의한 학원), 숙박·음식업종 사업체(다만, 호텔업·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)
- ⑧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공기업
- ⑨ 「초·중등 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- ⑩ 기타 곡성군에서 「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」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

3. 유의사항

- 채용기업은 중장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, 이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·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
- 중장년취업자 채용기업은 곡성군과 「중장년취업 지원협약」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
- 중장년취업자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, 기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
 -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중장년취업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
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중장년
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정부 및
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4. 문의처 :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(☎061-360-2932)

[서식1]

중장년취업채용신청서(기업용)

※ 접수번호 :

업 체 현 황	사업체명			대표자		
	사업자 등록번호			법인번호		
	주 소	□□□-□□□		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		
	피보험자수	본 사	명(채용 후 명)	지사(지점)	명(채용 후 명)	
	주 요 사업 내용	1. 2.		설립시기		
	업 종					
	고용노동부 등 타기관 인턴채용 현황	()명, 해당없음()				
	채용부서 및 담당자		전 화 번 호	() -	팩 스	- -
이메일 주소			@			
휴 대 전 화			- -			

회 사 연 혁	
회 사 비 전 등 소 개	

모 집 사 항	구 분	분 야	인 원	학 력(전공)	상세직무	정규직전환계획인원
	모집직종 1)					
	모집직종 2)					
	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	1. 2. 3.				
	근로조건	· 급여 : 월_____만원(도, 시·군 지원금 포함) · 근무시간 : · 휴일 : · 기타 복지사항 :				

※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□

본 사업장은 『**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**』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,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

① 소비·향락업체(단란주점 등), 근로자파견업체* 및 근로자 공급업체(용역업체 포함)	해당□ 해당없음□
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	해당□ 해당없음□
③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기업	해당□ 해당없음□
④ 취업지원협약 체결일 및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(인위적 감원) 있는 기업	해당□ 해당없음□
⑤ 노사분규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체불사업장	해당□ 해당없음□
⑥ 취업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,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(보험회사 등)	해당□ 해당없음□
⑦ 학원, 숙박·음식업종(호텔, 휴양콘도 제외), 공공기관, 공기업	해당□ 해당없음□
⑧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근무(타시도) 여부	해당□ 해당없음□

위와 같이 중장년취업자 채용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

년 월 일
 신청기업 대표

곡성군수 귀하

* 중장년 채용신청서는 제목을 “중장년 취업 채용신청서(기업용)”로 수정하여 별도 작성합니다.

[서식2]

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(기업용)

사 업 장 명		지사(지점)명	(연락처) -
---------	--	---------	---------

연 수 기 간	. . . ~ . . . (개월)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근 무 시 간	: ~ :
---------	-------

연 수 관 리		
관리책임자	직위	성명
근무부서 및 성명	근무부서	수습자 성명

운 영 계 획	
직무교육 (멘토방법)	
부서배치방법	
정 규 직 채용계획	

위의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.	
년 월 일	
회사 대표	직인
곡성군수 귀하	

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(기업용)

회 사 명 :

사업자번호 : (전화번호 :)

주 소 :

1. 전라남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·관리하고 있습니다.
 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중장년취업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,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
 -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·상실이력,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
 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: 서류,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
2. 중장년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, 전라남도 및 도내 시·군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.
3. 전라남도 및 도내 시·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·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4. 중장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(이력)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5.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6. 본인은 위 1~4의 내용에 따른 중장년취업 지원사업 참여·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자 : (인)

곡성군수 귀하

중장년취업선발자 명단통보서(기업용)

사업장명		대 표 자	
고용보험 피보험자수	명	채용확정 인원	명
(단위사업장)소재지			

※ 채용확정 즉시 관할 시·군에 통보해야 함

※ 통보이후에는 중장년취업 수습자와 근무조건 등에 대해 「중장년취업약정서」를 체결하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시·군과 「중장년취업지원약정」을 체결해야 함

선발자 명단				
연번	성 명	주민등록번호	수습예정기간	연락처
1				
2				
3				

위와 같이 중장년취업수습 선발자 명단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 직인

(시군) 귀하

운영 절차	수습선발자 명단 통보→중장년취업수습약정체결(수습자-기업)→중장년 취업지원협약체결 신청(기업-시군)→협약체결→근무개시→지원금 신청→ 지원금 지급
----------	---

중장년취업약정서

이 약정서는 전라남도(시군)에서 지원하는 「중장년취업지원사업」 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_____(이하 “사업주”이라 함)와 실무수습 참여자 _____(이하 “참여자”이라 함)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,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.

1. 근로계약기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2. 근 무 장 소 :
3. 업무의 내용 :
4. 근로시간 : __시__분부터 __시__분까지(휴게시간 : 시 분 ~ 시 분)
5. 근무일/휴일 : 주__일/ 일
6. 휴가 :
7. 임 금 : 월급 _____원

항목		금액	비고
기본급		원	
수당		원	
		원	
		원	
		원	
상여금		원	

- 임금지급일 : 매월 ____일(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)
- 지급방법 : 예금통장에 입금

8. 기 타

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

년 월 일

(사업주) 사업체명 :

주 소 :

대 표 자 : (서명)

(참여자) 주 소 :

연 락 처 :

성 명 : (서명)

표준 근로계약서

_____ (이하 “갑”이라 함)과(와) _____ (이하 “을”이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- 1. 근로계약기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- 2. 근로장소 :
- 3. 업무의 내용 :
- 4. 근로시간 : __시__분부터 __시__분까지(휴게시간 : 시 분 ~ 시 분)
- 5. 근무일/휴일 : 주__일/토,일요일
- 6. 임금
 - 월급 : _____ 원

항목		금액	비고
기본급		원	
수당		원	직책수당, 기술수당, 연장·휴일수당, 식대, 교통비 등 각종수당
		원	
		원	
		원	
상여금		원	

- 임금지급일 : 매월 __일(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)
 - 지급방법 : 예금통장에 입금
7. 기 타
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

년 월 일

(갑) 사업체명 :
주 소 :
대표자 : (서명)

(을) 주 소 :
연락처 :
성명 : (서명)

중장년취업지원협약서

제1조(목적)이 협약은 곡성군(이하 “시군”이라 한다)과 ○○ 기업(이하 “실시기업”이라 한다)간에 『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.

제2조(유효기간 및 지원금 지급)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“실시기업”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 까지 효력을 갖는다.

② “시군”은 전라남도 중장년취업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“실시기업”이 채용한 중장년취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.

제3조(중장년취업 연수장소) ① 중장년취업의 연수 장소는 별첨 「중장년취업약정서」에서 정하는 “실시기업”의 사업장 내로 한다.

② “실시기업”은 중장년취업 참여자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외근 영업을 시키거나,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다.

제4조(중장년취업계획서의 작성·비치) “실시기업”은 중장년취업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, 그 내용을 중장년 취업 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
제5조(실시기업의 협력의무) “시군”은 중장년취업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“실시기업”에게 지침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, 지도·점검 및 이를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, “실시기업”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제6조(중장년취업 운영상황의 통보) “실시기업”은 중장년취업 운영 실적을 “시군”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, “시군”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..

제7조(중장년취업지원금 지급) ① “시군”은 중장년취업약정서에 따라 “실시기업”이 중장년취업자에게 지급한 약정임금 중 도(시군)의 중장년 취업지원금을 월단위로 “실시기업”에게 지급한다.

② “시군”은 “실시기업”이 ‘부득이한 사유’로 중장년취업약정을 중도

해지하는 경우에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·지급한다.

- ③ “실시기업”은 급여일에 중장년취업급여를 지급한 다음, 익월 5일까지 급여대장 사본(입금예금통장 포함)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“시군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“실시기업”은 중장년취업자에 대하여 “시군”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 「중장년취업약정서」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⑤ “시군”은 “실시기업”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중장년취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
제8조(지원금의 반환) “실시기업”은 전라남도의 「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」사업 지침 및 본 협약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9조(제재) ① “시군”은 “실시기업”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장년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- ② “시군”은 “실시기업”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중장년취업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③ “시군”은 “실시기업”이 “시군”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중장년취업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④ “시군”은 “실시기업”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1개월내 여타 근로자를 고용조정(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)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⑤ “시군”은 “실시기업”이 본 약정체결이후 또는 정규직 채용 후 지원기간에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경우 그 때부터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, 향후 2년간 중장년취업 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.
- ⑥ “실시기업”은 협약서 위반 등 부당한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부당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을 “시군”에게 반환하여야 하며

“시군”은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- ⑥ “시군”은 “실시기업”이 약정한 수습기간 만료이전에 ‘부득이한 사유’ 이외의 사유로 「중장년취업약정」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추후 중장년취업자 채용 지원을 금지한다.
- ⑦ “실시기업”이 “시군”으로부터 반환요구나 전라남도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“시군”은 “실시기업”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,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.
- ⑧ “실시기업”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중장년취업사업을 운영하거나, “시군”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“시군”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

제10조(중장년취업사업의 중단 등) “실시기업”은 중장년취업기간 종료 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 “시군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정규직 채용전환) ① “실시기업”은 정규직 채용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
- ② “실시기업”은 중장년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“시군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점검·평가 등 조치) ① “시군”은 “실시기업”의 중장년취업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년취업운영계획, 중장년취업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
- ② “시군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·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“실시기업”에 대하여 주의,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③ “시군”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지켜지지 아니하거나,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“실시기업”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- ④ “시군”은 “실시기업”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한다.

제13조(준용)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전남형
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」 시행지침이나 관계법령, 기타 사
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.

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“시군”, “실시기업”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일일 일

(시군) 곡성군수 직인

(실시기업) 회사

대표 직인

사업자등록번호

주소

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출근카드 성 명 : _____ 수습기간 : _____ (개월) 채용업체 : _____				수습기간 : _____ (개월)				
				출근 : 일, 결근 : 일, 유급휴일 : 일				
				월 일	출근	결근	확 인	
							수습자	담 당
월 일	출근	결근	확 인					
			수습자	담 당				
임금지급여부		지급일 :		지급액 : 원				
				※수령확인 성명 서명				

※ 중장년취업자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, 직접 서명
 ※ 지급액은 급여총액(세액 공제 전 금액)

[서식 9]

정규직 명단 통보서

사업장 개요			
사업장명		지사(지점)명	
대표자		연락처 (담당자)	() - ()
소재지			

정규직 채용 사항			
채용 수습자 총인원	명	정규직 채용인원	명

정규직 채용자 명단				
성명	주민등록번호	근로계약 체결일	정규직 채용일	연락처
	-			
	-			
	-			
	-			
	-			
	-			
※ 근로계약 체결일 및 정규채용일자 등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대로 기재				

위와 같이 전라남도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정규직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. 년 월 일 대표 직인	
시장·군수 귀하	

※ 첨부 : 근로계약서 사본

()월 중장년취업자 지원금 신청서

사업장명		대표자	
------	--	-----	--

사업자 등록번호	
----------	--

소재지		연락처 (담당자)	() - ()
-----	--	--------------	-----------

지급희망 은행계좌	계좌번호 (예금주)	(은행 지점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

지원금 신청 대상 기간	. . . ~	지 원 금 신청금액(계)	(₩ 원)	
취업자 성명	주민등록번호	채용일 (또는 해지일)	임금 지급액	지원금
			원	원
			원	원
			원	원
			원	원
휴업 또는 산재요양	기간	~	급 여 (보상비)	원

위와 같이 「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」 사업 근무자에 대한
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회사 대표

직인

00 시장·군수 귀하

- 【구비서류】
1. 취업약정서 사본(협약 체결 후 변경이 있는 경우)
 2. 참여자 출근부 사본
 3. 임금대장 사본
 4. 계좌이체내역(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)
 5. 4대 보험 납부(고지) 영수증

()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

사업장명		대표자	
------	--	-----	--

사업자 등록번호	
----------	--

소재지		연락처 (담당자)	() - ()
-----	--	--------------	-----------

지급희망 은행계좌	계좌번호 (예금주)	(은행 지점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

지원금 신청 대상기간	. . . ~ . . .	지원금 신청금액(계)	(₩) 원	
취업자 성명	주민등록번호	정규직 전환일 (또는 퇴사일)	임금 지급액	시·군지원금
			원	원
			원	원
			원	원
			원	원
휴업 또는 산재요양	기간	~	급여 (보상비)	원

위와 같이 「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」 사업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	
년 월 일	회사 대표 직인
00 시장·군수 귀하	

【구비서류】	1.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사본(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) 2. 정규직 전환자 출근부 사본 3. 임금대장 사본 4. 계좌이체내역(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)
--------	---

중도탈락자 명단통보서

사업장명		대 표 자	
고용보험 피보험자수	명	중도탈락 인원	명
소재지			

- ※ 참여기업은 중장년취업자가 당해 기업에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체자 충원 요청 가능
- ※ 참여기업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약정 만료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2년간 사업 참여 금지
- ※ 참여기업은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즉시 시·군에 통보해야 함

중도 탈락자 명단

연번	성 명	주민등록번호	취업기간	중도탈락일	사 유
1		-			
2		-			
3		-			
4		-			
5		-			

위와 같이 중도 탈락자 명단을 통보합니다

년 월 일

회사 대표

직인

00 시장·군수 귀하

운영 절차	중도탈락자 명단 통보→급여 지급→지원금 신청→지원금 지급 【 첨부 】 사직서 사본 1부.
----------	--

중장년 취업장려금 지급신청서

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-	
	주소				
	연락처	주소지 전화번호		휴대전화	
		전자우편주소			
	지급계좌	은행명	은행지점		
		예금주			
계좌번호					

인턴 취업 현황	사업체명				
	사업자등록번호				
	소재지				
	사업장 연락처	() -			
	취업일	년 월 일			
	지급분야	예시) 제조업생산직			
	채용약정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	
	수습만료일	년 월 일			
	신청금액				

위와 같이 취업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 귀하

- 【구비서류】 1. 사업자등록증 사본(기타 입증자료)
2. 재직증명서(업무분야 기재)
3. 통장사본(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)